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 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천보만 호텔 PSPD, 나우누리 유-텔 : 참여연대 / 전자우편 : pspd@soback.korn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 이강준 : 723-5302)
제 목 국회의장에 항의 방문
날 짜 1998. 11. 20. (총 1 쪽)

보 도 협 조 요 청 서

입법청원하려던 시민의 국회 정문통과를 제지한 것에 대한 국회의장실 항의방문

일시 및 장소 : 1998년 11월 20일 (금) 오전 11시, 국회의장실.

1. 11월 19일,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와 36개 임대주택 주민 공동으로 집회를 연후 대표단 (김칠준변호사와의 14명)이 '임대주택관리법' 입법청원을 위하여 국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의경 20여명에 의하여 정문통과를 제지당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2. 참여연대는 국회의장실에 공식 항의 방문을 통해, '입법청원하려는 시민을 정문에서 제지한 법적근거가 무엇이지를 밝히고, 정문 제지를 지시한 책임자를 처벌할 것,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국회의장의 공식사과'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끝.

문서번호 98-의정-1120

수 신 국회의장님

참 조 국회사무총장

발 신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담당: 이강준 간사 723-5302))

제 목 청원인의 국회출입을 부당하게 제지당한 데 대한 참여연대의 항의서

날 짜 1998 . 11. 20. (총 2 쪽)

1. 국민의 국회를 만들기 위해 수고하고 계신 의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1월 19일, 참여연대 회원과 전국 각 지역 임대주택 지역 주민은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을 위한 집회를 여의도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가졌습니다. 집회를 마친후, 전국 각 지역·단체 대표(김철준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외 14명)는 이 법안의 제정청원을 위해 국회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임대주택관리법' 제정청원을 위한 대표단은 국회 정문에서 20여명의 의경에 의해 정문 출입을 제지 당했습니다.

3. 지금까지 참여연대는 수십차례에 걸쳐 입법청원을 한 바 있으며, 그 청원서는 국회 본청에 소재한 청원과에 접수시켜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문 방호 담당자는 '청원은 정문 민원실에서 접수하도록 돼 있다'며 청원인의 정문 통과를 제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문에는 청원 접수를 위한 시설·인원 등의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았으며, 청원과 등 몇 군데에 전화를 걸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청원 대표단은 신분을 밝히고 입법청원서를 제시하며 '청원인의 국회 출입을 막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청원이 목적이므로 정문에서 접수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답변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참여연대 등 청원 대표단은 '국회 정문은 방문증 교부장소가 아니라면서 출입을 통제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없으며, 또한 정당한 시민의 권리인 정문 통과를 제지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국회 안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에 국회 경호대 소속 의경 20여명이 청원 대표단을 에워싸며 국회 정문통과를 제지하였습니다.

4. 국회정문의 출입을 막으려면 불법행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는 판단하에서만 가능한데, 청원인들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도 아니고, 신분증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방문 목적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입법청원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청원인의 출입을 통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국회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한 것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4. 이에 우리는 국회의장님께 다음의 사항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 목적(입법청원)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문 통과를 제지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문 방호 담당자에게 정문출입 제지를 지시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당한 이번 사태에 대하여 그 책임자를 처벌하고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째,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안조치 외에는 국민들이 누구나 자유로이 국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박상증